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연월일 : 2007. 6. 29.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별지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중 “영”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각각 “대전광역시 시정조정
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중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
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별표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별표 제2호나목(4)(가)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5
호”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로 한다.

제2조, 제10조제6호 및 별표 제1호다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각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을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으로, 같은 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7호 각 목외의 부분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같은 조 같은 호가목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같은 조 같은 호나목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공사채등록법”을 “「공사채등록법」”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중 “헌법”을 “「헌법」”으로, “정부조직법”을 “「정부조직법」”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4)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7)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시개발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u>동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u>도시개발법</u>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이를 적용한다.</p> <p>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시행 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 별로 조례로 정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u>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u>(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p> <p>제14조(용자조건)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자이율은 연 6.5 퍼센트로 하되 특별히 용자조건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u>시정조정위원회</u>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② ~ ⑤ (생략)</p> <p>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생략) ② 채권의 발행시기, 발행규모등은 <u>시정조정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조(목적) ----- 「<u>도시개발법</u>」 및 「<u>도시개발법 시행령</u>」-----</p> <p>제2조(정의) 「<u>도시개발법</u>」(이하 “법”이라 한다)-----</p> <p>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p> <p>----- 「<u>도시개발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u>-----</p> <p>제14조(용자조건) ①----- ----- <u>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u>-----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u>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u>-----</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정관의 작성 기준(제7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략) 9.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u>예산회계법</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10. ~ 18. (생략) 	[별지] 정관의 작성 기준(제7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9.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 18. (현행과 같음)
[별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8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정부투자기관</u>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4) ~ (7) (생략) 나.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u>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주택건설촉진법</u>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생략) (5) (생략) 다. ~ 라. (생략) 3. (생략) 	[별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18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공공기관</u>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4) ~ (7)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제2조제5호-----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령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6호]

- 제13조 (조합설립의 인가)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1인 이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76호]

-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제²조 (적용범위) 이 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²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²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하로 한다.

□ 예산회계법

[폐지 2006.10.4 법률 제8050호]

「예산회계법」을 폐지한다.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¹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387호], 시행일 2007.10.28,

제¹①조 (공동사업주체) 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⁹조제¹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⁹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제³②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제¹항 내지 제³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시행일 2007.11.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1, 2001.1.16, 2002.12.11, 2003.1.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 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버. 삭제 <2002.12.11>
-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처.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 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²조제⁵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소. 과학관육성법 제²조제¹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³조제²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조. 초·중등교육법 제²조 및 고등교육법 제²조제¹호 내지 제⁵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초. 군사시설보호법 제²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코. 임대주택법 제²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토. 영유아보육법 제²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포. 노인복지법 제³²조·제³⁴조 및 제³⁸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²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시설
 구. 신향만건설촉진법 제²조제²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향만건설사업의 대
 상이 되는 시설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²조제¹항제³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¹³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²조제¹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②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③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⁴조제¹호 내지 제³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
 기반시설을 말한다.
- ④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
- ⑤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⁹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¹⁰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제¹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 ⑥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⑦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
 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⑧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²1조제¹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 ⑨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⑩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Ⅰ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 ⑪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¹²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
 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⑫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
 으로서 제¹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⑬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가. 도로법
 나. 유료도로법
 다. 철도사업법
 라. 철도건설법
 마. 도시철도법

- 바. 항만법
- 사. 항공법
-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차. 수도법
- 카. 하수도법
- 타. 하천법
- 파. 「어촌·여항법」
- 하. 폐기물관리법
- 거. 전기통신기본법
- 너. 전기통신사업법
- 더. 전파법
- 러. 전원개발촉진법
- 머. 도시가스사업법
-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저. 화물유통촉진법
-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커. 「관광진흥법」
- 터. 주차장법
- 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허. 수질환경보전법
-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로. 청소년기본법
-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소. 삭제 <2004. 12. 31>
-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 포. 과학관육성법
- 호. 초·중등교육법
- 구. 고등교육법
- 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두. 임대주택법
- 루. 영유아보육법
- 무. 노인복지법
- 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수. 주택법
- 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추. 산림법
- 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나.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
 - 라. 삭제 <2002.12.11>
 - 마. 중소기업은행
 - 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2007년 7월 2일
3. 상정일자 :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7. 7. 19)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별지 및 별표).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예순)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예산회계법」 등이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